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# 출원정보 변경신고서

PCT 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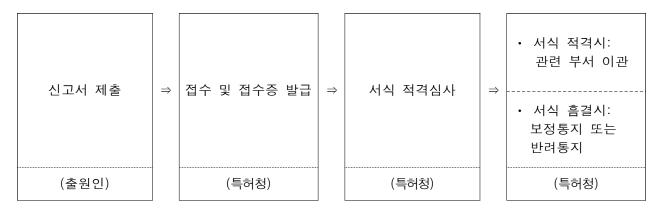
(앞쪽)

【국제출원번	호				
【신고구분】	□ 출원인 변경		□ 발명자(고안자) 변	[경	
	□ 출원인 겸 발명자(고인	<u>반</u> 자) 변경	□ 출원인 정보변경		
	□ 발명자(고안자) 정보변경	경	□ 출원인 겸 발명자	(고안자) 정보변경	
	□ 대표자 정보변경		□ 대리인 정보변경		
【출원인】					
【성명(명칭	당)]				
【주소】					
(【특허고객번호】)					
【대리인】					
【성명(명칭	당)]				
【주소】					
【대리인번	호】				
【변경내용】					
(【변경항목	] )				
【변경전】					
【변경후】					
위와 같이 특	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.				
		출원인(대	믜인)	(서명 또는 인)	
【첨부서류】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(기재요령 제6호 참조)					

## 1. 신고구분 및 관련 규정

신고구분	내 용	관련 규정	
출원인 변경, 발명자(고 안자) 변경, 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 변경	출원인 또는 발명자(고안자)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[출원인과 발명자(고안자)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] 또는 출원인경 발명자(고안자)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	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82조 및 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 제17조	
출원인 정보변경, 발명자 (고인재) 정보변경, 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 정보 변경, 대표자 정보변경, 대리인 정보변경,	출원인,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・주소・국적・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거나 발명자 (고안자)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[출원인과 발명자 (고안자)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]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 (고안자)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	「특허법 시행규칙」 제81조 및 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 제17조	

#### 2. 처리절차



## ※ 기재요령

#### 1. 【국제출원번호】란

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.

[예] 【국제출원번호】PCT/KR2007/123456

#### 2. 【신고구분】란

신고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□ 안에 표시(예: ☑)합니다.

## 3. 【출원인】란

## 가. 【성명(명칭)】및【주소】

【성명(명칭)】란에는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, 【주소】란에는 주소를 적으며,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서(REQUEST)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.

## 나. 【특허고객번호】

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.

#### 다. 공동출원인

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서(REQUEST)에 첫번째로 적은 대표출원인을 적습니다.

4. 【대리인】란
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【대리인】란의 【성명(명칭)】, 【주소】 및 【대리인번호】 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, 주소 및 대리인번호를 적고,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며,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서(REQUEST)상의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.

5. 【변경내용】란

가. 출원인, 발명자(고안자),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

- (1) 【변경항목】란은 적지 않습니다.
- (2) 【변경전】란의 다음 행에 【성명(명칭)】을 적고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【특허고객번호】란을 만들어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. 변경 전 출원인[발명자(고안자)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.
- (3) 【변경후】란의 다음 행에 【성명(명칭)】, 【주소】, 【전화번호】, (【특허고객번호】)(특허 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), 【국적】, 【거주국】 및 【지정국】란을 각각 만들어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, 변경 후 출원인[발명자(고안자) 또는 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적습니다. 발명자(고안자)를 변경하 는 경우에는 【국적】 및 【거주국】란은 적지 않습니다.
  - [예] 【변경후】

【성명(명칭)】

【주소】

【전화번호】

(【특허고객번호】)

【국적】

【거주국】

【지정국】

- 나. 출원인, 발명자(고안자), 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,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
  - (1) 【변경항목】란에는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, 주소, 국적, 서명, 인감 중 변경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적습니다.
  - (2) 【변경전】란과 【변경후】란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. 출원인[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의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.
    - [예] 【변경항목】 성명

【변경전】 HONG, Kildong

【변경후】 HONG, Gildong

- (3) 2 이상의 항목을 동시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[변경내용] 란을 추가하여 변경 전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.
  - [예] 【변경내용】

【변경항목】 성명

【변경전】 HONG, Kildong

【변경후】 HONG, Gildong

【변경내용】

【변경항목】 주소

【변경전】 123, Dunsan-dong, Seo-gu, Daejeon

【변경후】 150, Dunsan-dong, Seo-gu, Daejeon

(4)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【변경항목】란에 적되 【변경전】란과,

【변경후】란을 삭제하고 변경하려는 서명 또는 인감이미지를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.

[예] 【변경항목】서명(인감)

- (5) 대리인관련 사항 및 출원인[대표자, 발명자(고안자), 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관련 변경사항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- 다. 국제출원의 언어가 국어 또는 일어인 경우에는 【성명(명칭)】, 【주소】, 【국적】, 【거주국】에 대한 국문 또는 일문표기와 영문표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.

#### 6. 【첨부서류】란

- 가.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(1)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. 출원인[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후출원인[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.
  - (2)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. 출원인, 발명자(고안자), 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,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정보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.
  - (3)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(기재요령 제4호 참조)
- 나. 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출원인[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 변경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  - (1) 출원인[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 변경의 원인이 증여 상속 등에 의한 경우
    - ·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(외국인은 증여·상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- (2) 출원인[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 변경의 원인이 법인의 분할 합병에 의한 경우
    -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외국법인은 분할・합병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- (3) 출원인[출원인 겸 발명자(고안자)] 변경의 원인이 매매계약에 의한 경우
  - 양도증. 이 경우 양도증은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외국인은 국적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국 적증명서)를 제출하면 됩니다.

[예]

【주소】

- (1)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,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.
  - [예] 【첨부서류】 위임장 1통
- (2) 첨부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(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)에 해당하는 서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,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,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정보를 적습니다.
  - [예]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[상호: ○○○, 법인등록번호: 000000-0000000]
- (3) 첨부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 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(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)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. 따라서,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,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한편,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  - [예 1] 주민등록표 등본・초본 1통 [성명: ○○○, 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]
  - [예 2] 사업자등록증명 1통 [성명: ○○○, 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, 사업자등록번호: 000-00-00000]
  - [예 3]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1통 [성명: ○○○, 주민등록번호: 000000-0000000, 보훈번호: 000-000000]
- 라.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(스캐닝)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 (300dpi 권장)의 흑백 TIFF(Tagged Image File Format)로 합니다.
- 마. 첨부서류를 PDF(Portable Document Format)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